

#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2019년 2월 27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. 21. 이정인 의원
2. 회부일자 : 2019. 1. 23.
3. 상정일자 :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
【2019년 2월 27일 상정·원안(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정인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, 이는 상위 법률에서도 제한 규정이 없음.
-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“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”라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법

익의 실익이 없고,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조례 제5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 포함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.(안 제5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

- 조례 제정 시 제5조에 해당 단서 조항은 일부 자치구가 자치조례를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, 자치구간 형평성 및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음.

※ 2009년 당시 강남구 3만원, 중구·양천구·송파구 2만원 지급

-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자치구는 조례 개정(또는 폐지)을 통해 자치구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폐지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 하였음.
- 다른 조례에 근거한 참전명예수당 중복금지 지급규정이 삭제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나, 향후 자치구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를 별도 신설하여 지급할 경우 자치구 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.

<표 1>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 및 연령별 현황자료

■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(전체인원, 국가보훈처 등록)

구 분	'15. 5월	'16. 5월	'17. 5월	'18. 5월
유공자 수	68,561	64,824	60,754	57,480
전년대비	-	△3,737 (5.5%)	△4,070 (6.3%)	△3,274 (6.4%)

■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(18년 6월말 기준/ 평균 78세)

합 계	65~69	70~74	75~79	80~84	85~89	90~94	95~99	100세 이상
38,179	3,660	15,567	3,851	2,539	9,757	2,586	210	9

※ '16년 5월~'18년 5월(3년간) 평균 감소율은 6.1%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이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, 이는 상위 법률에서도 제한 규정이 없고,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법익의 실익이 없으며,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됨.
- 현재 자치구간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동일하고 참전유공자 예우·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당 단서 조항 삭제는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- 그러나 자치구가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신설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그 예우 및 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 바, 이는 형평성 및 정의 관념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**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이**

○ '14~'18년 평균 지급인원

(단위 : 명/ 백만원)

구 분	예 산	연간 집행액	월평균 지급인원	전년대비인원
2014년	311억	30,649	51,082	-
2015년	311억	30,685	51,142	△60
2016년	306억	29,182	48,637	△2,505
2017년	306억	26,105	43,508	△5,129
2018년	264억	11,674(6개월)	38,913	△4,595

**참전명예수당 소요예산**

○ '19~'23년 소요예산(5만원증액시/ '18년 월평균지급인원에 감소율 6% 적용)

(단위 : 명/ 백만원)

구 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지급인원	44,000	36,600	34,400	32,300	30,300	28,500
전년대비	-	△2,300	△2,200	△2,100	△2,000	△1,800
소요예산	26,400	43,920	41,280	38,760	36,360	34,200
전년대비증감	-	증17,520	△2,640	△2,520	△2,400	△2,160

구 분		조 문	조례명
강북구	사망 위로금	<b>제5조의2(사망위로금의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	「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동작구	사망 위로금	<p>&lt;조례&gt;  <b>제5조(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)</b> 구청장은 1년 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</li> <li>2.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의 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</li> <li>3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</li> </ol> <p>&lt;시행규칙&gt;  <b>제2조(지급금액)</b>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은 20만원으로 한다.</p>	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성북구	사망 위로금	<p><b>제3조(지급대상자)</b>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</li> <li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</li> <li>3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</li> </ol>	

구 분		조 문	조례명
		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<b>제4조(지급금액 및 방법)</b>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.	
양 천 구	사 망 위 로 금	<b>제9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1. 02.> ②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.<개정, 단서 삭제 2017. 11. 02.>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	「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은 평 구	사 망 위 로 금	<b>제4조(사망위로금 지급 등)</b>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	
중 구	사 망 위 로 금 · 위 문 금	<b>제5조(사망위로금의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6.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6.25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 및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구비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 <b>제6조(위문금의 지급)</b>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보훈의 달에 30,000원 지급[본조신설 2016. 12. 28.] 2. 설, 추석에 30,000원씩 지급 (신설 2017. 11. 1.)	「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중 랑 구	사 망 위 로 금	<b>제4조(지급금액 및 방법)</b>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	
서 초 구	참 전 명 예	<b>제4조(지원사업)</b>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 1.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수당 지급	「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

구 분	조 문	조례명
수 당	2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	※'09.12.31 폐지
사 망 위 로 금	<p><b>제4조(지급금액 및 방법)</b>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.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동장의 확인을 거쳐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「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」 ※'10.02.08 신설 '15.05.04 폐지</p>
사 망 위 로 금	<p><b>제14조(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‘위로금’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&lt;개정 2017.4.20.&gt;</p> <p>1.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</p> <p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(전상군경)·제6호(공상군경)·제9호(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)에 해당하는 자로서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</p> <p>② 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. &lt;개정 2017.4.20.&gt;</p> <p>③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.</p> <p>④ 위로금 신청은 유가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6.11.17.&gt;</p> <p>⑤ 위로금 지급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「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</p>
송 파 구	<p><b>제4조(지원사업)</b> 송파구청장은 참전유공자(이하 “참전유공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</p> <p>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</p> <p>2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</p> <p>3.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「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※'09.11.09 폐지</p>

구 분	조 문	조례명
	<p><b>사망위로금</b></p> <p><b>제9조(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&lt;개정 2018.11.8&gt;</p> <p>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.</p> <p>③ 사망위로금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「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</p>
<p><b>관악구</b></p> <p><b>생활안정지원</b></p>	<p><b>제2조(지원대상자)</b>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 &lt;개정 2013.04.04.&gt;</p> <p>( 전 략 )</p> <p>4.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</p> <p><b>제3조(지원 내용)</b>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개정 2013.04.04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명절(설, 추석) 및 연말 위문금·위문품</li> <li>2. 교육관련 경비</li> <li>3. 월동대책관련 경비</li> <li>4. 문화체육활동 경비</li> <li>5. 긴급구호비</li> <li>6. 보훈의 날, 장애인의 날, 경로의 날, 가정의달, 어린이 날,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·위문품</li> <li>7.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·위문품</li> <li>8. 급식관련 경비</li> <li>9. 이사비용</li> <li>10.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&lt;개정 2013.04.04.&gt;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 &lt;개정 2013.04.04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·지원품</li> <li>2. 관악구 예산</li> </ol>	<p>「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</p>
<p><b>서대</b></p> <p><b>대</b></p> <p><b>사망</b></p>	<p><b>제8조(사망위로금의 지급)</b>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족에게</p>	<p>「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</p>

구 분		조 문	조례명
문 구	위 로 금	<p>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 등록 하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 (개정 2018. 1. 3.)</p> <p>2. 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한다.</p> <p>3.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4.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</p>	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광 진 구	생 활 안 정 지 원	<p><b>제2조(지원대상자)</b> 서울특별시광진구(이하 “광진구”라 한다)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( 전 략 )</p> <p>4. 참전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</p> <p><b>제3조(지원범위)</b>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&lt;개정 2008.06.30&gt;</p> <p>1. 급식관련 경비 지원</p> <p>2. 교육관련 경비 지원</p> <p>3. 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</p> <p>4. 월동대책비 지원</p> <p>5. 긴급구호비 지원</p> <p>6.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</p> <p>7. 명절 위문금품 지원</p> <p>8. 호국보훈의 달, 장애인의 날,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</p> <p>9. 중·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 &lt;신설 2009.06.15&gt;</p> <p>10.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,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. &lt;신설 2008.06.30&gt;</p> <p>1.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</p> <p>2. 광진구 예산</p> <p>3.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</p>	「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
강	사	<b>제9조(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)</b> ① 구청장은 제5	「강동구 국가

구 분	조 문	조례명
동 구 망 위 로 금	<p>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&lt;개정 2017.9.27. 2017.12.27.&gt;</p> <p>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 제출한 경우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7. 9. 27.&gt;</p> <p>③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</p> <p>④ 유족의 범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다.</p>	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성 동 구 사 망 위 로 금	<p><b>제15조(사망위로금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 &lt;개정 2013.9.17&gt;</p> <p>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</p> <p>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비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할 수 있다. &lt;개정 2013.9.17&gt;</p> <p>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.&lt;개정 2013.9.17&gt;</p>	「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종 로 구 사 망 위 로 금	<p><b>제15조(사망위로금 등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 및 조문용품(근조화, 근조기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.</p> <p>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</p> <p>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서식의 국가유공</p>	「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구 분	조 문	조례명
	<p>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⑤ 구청장은 설날,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1명당 5만원 이내의 위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
영등포구	<p><b>사망위로금</b></p> <p><b>제11조(사망위로금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(사망일)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&lt;개정 2013.12.12, 2017.07.13.&gt;</p> <p>②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같다. 다만, 제1항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희생·공헌자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&lt;신설 2013.12.12&gt;</p> <p>③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. &lt;개정 2013.07.25, 2013.12.12&gt;</p> <p>④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&lt;개정 2013.12.12, 2017.07.13.&gt;</p> <p>⑤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가족의 범위 및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&lt;개정 2013.12.12&gt;</p>	「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강서구	<p><b>사망위로금</b></p> <p><b>제9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희생·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.(신설 2011.6.30)</p> <p>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(개정 2018.4.25.)</p> <p>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</p>	「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구 분	조 문	조례명
	<p>용을 받는 사람</p> <p>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(개정 2018.4.25.)</p> <p>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(개정 2018.4.25.)</p> <p>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(신설 2018.4.25.)</p> <p>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</p> <p>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비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할 수 있다.</p> <p>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 준용한다.(개정 2018.4.25.)</p>	
용 산 구	<p><b>제6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.&lt;개정 2016.11.04&gt;</p> <p>②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.</p> <p>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「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구 로 구	<p><b>제11조(사망위로금 지급)</b>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조제6호에 따라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③ 위로금 신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여야</p>	「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구 분	조 문	조례명
생활안정지원	<p>한다.</p> <p>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 따른다.</p>	
	<p><b>제2조(지원대상자)</b>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( 전 략 )</p> <p>4.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</p> <p><b>제3조(지원내용)</b>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급식관련 경비 지원</li> <li>2. 교육관련 경비 지원</li> <li>3. 교통보조비 지원</li> <li>4.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</li> <li>5. 명절위문금품 지원</li> <li>6. 생신위문금 지원</li> <li>7. 사랑 음료 지원</li> <li>8. 영정사진 지원</li> <li>9. 월동대책비 지원</li> <li>10. 긴급구호비 지원</li> <li>11.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·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</li> <li>12.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</p>	<p>「 구 로 구 저 소득주민 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</p>

※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상 참전명예수당의 명칭으로 규정된 사례는 없었고, 사망 위로금(강북구, 동작구, 성북구, 양천구, 은평구, 중구, 중랑구), 위문금(중구)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음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찬성 8명, 반대 0명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

#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월 21일

발 의 자 : 이정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홍성룡, 김경영, 김태호,  
김소양, 이준형, 노승재,  
전병주, 김혜련, 문장길,  
김경우, 오현정, 김화숙,  
이영실, 봉양순, 이병도,  
박순규, 김용연, 김동식,  
서윤기 의원 (19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, 이는 상위 법률에서도 제한 규정이 없음.
-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“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” 라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법익의 실익이 없고,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 포함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.(안 제5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**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시장은 제 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<u>다만,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